

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(안)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○ 소비자 보호법

○ 제3조 -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 를 향유한다.

- 1)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2)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3)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·구입 장소·가격·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
- 4)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
- 5)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- 6)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
- 7)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

○ 제5조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- 1)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
- 2)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
- 3)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
- 4)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·육성

○ 제6조 -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- 1) 물품 및 용역의 성분·함량·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
- 2)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
- 3)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○ 제9조 제1항 -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- 1) 용도·성분·성능·규격·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2)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3) 광고의 매체 및 시장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

○ 제16조 제1항 - 사업자는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항 - 사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항 - 사업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항 - 사업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○ 제17조의 5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 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.

○ 소비자보호법 시행령

○ 제5조 -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- 1)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
- 2)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
- 3)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·권고·공표등
- 4) 소비자단체·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
- 5)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·운영등
- 6)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

2.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

○ 소비자 단체

- 전국 주부교실 이천시지부
- 이천 YMCA

※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구 제정부에 등록단체임.

○ 소비자 단체 '98년도 지원현황

- 지원액 : 7,000천원
- 주부교실 : 5,000천원
- YMCA : 2,000천원

3.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(안)은 소비자보호법에서 권한 위임되어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,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의 의무등을 총칙으로 규정하고,
- 소비자의 권리보호,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육성지원, 사업자의 의무, 소비자의 피해 구제, 조사·권고 및 공표, 소비자 정책심의회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

- o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 보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